

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지역 기업부설연구소는 '08년 179개에서 '16년 400개로 급증하는 등 중소기업의 독자생존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
- 나. 중소기업 업종전환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, 지역 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주도형 R&D추진 필요
- 다. 이에따라,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업종 다각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여 수직적 산업구조 탈피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 예정액 : 금489,000천원(시비)
- (2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3) 사업연도 : 2017년
- (4) 사업대상 : 구미시 관내 중소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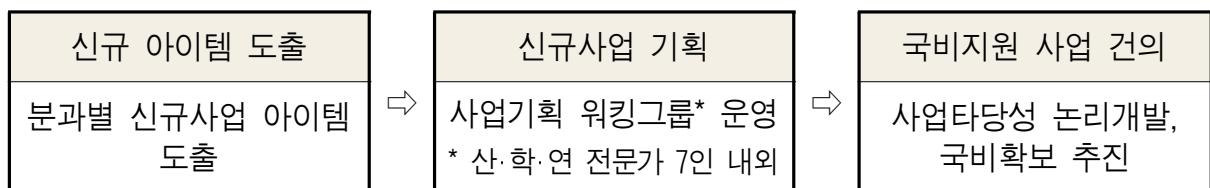
나. 주요 사업

- (1) 신사업 발굴기획 및 프로젝트 사업화 : 정부 R&D정책과 연계하여
산·학·연 기술수요 조사 및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획과제 발굴
- (2) 파트너십 구축 및 기술교류협력 활성화 : 정부 R&D 과제 지역
기업 유치를 위한 기술협력 체계 구축
- (3) 기업수요 대응형 연계 플랫폼 강화 : 중소기업의 중·단기
상용화 기술개발 및 컨설팅
- (4) 정부출연 연구기관, 대학, Geri 등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화
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」

구 분	지원내용	추진시기
국가R&D과제 기획·참여 지원	· 국가R&D사업 정보제공 : 산업부, 미래부, 중기청 등 맞춤형 R&D사업 정보 · 국가R&D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: 기술·시장 정보 분석,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등	'17년중
신기술 상용화 추가 R&D 지원	· 신기술 상용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(기술전문가 매칭) · 신기술 완성도 제고지원 : 상용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, 상용화 제품의 기능/성능향상	'17년 상반기
기술역량 강화 교육	· R&D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, 지재산, 표준 등 교육 지원	

「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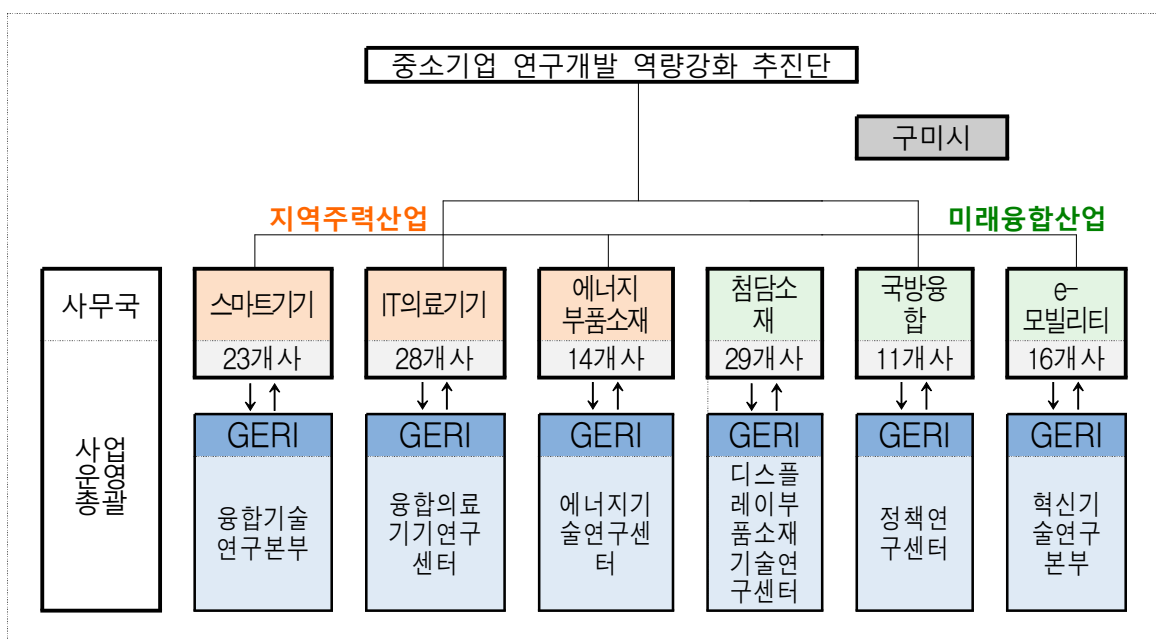


「중소기업 효율적 업종전환 지원」

구 분	지원내용	추진시기
업종전환 분야 탐색 지원	· 업종전환 분야 기술·시장 정보, 제품 기술수준 파악 제공	‘17년중
현안 애로기술 해결	· 연구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기술애로 지원 (기술전문가 매칭)	‘17년 상반기
시제품 제작지원	· 3D프린터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	
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	· 지역대학, Geri 등 보유 장비 우선 사용·사용료 지원	‘17년 상반기 (수요조사) ‘17년 하반기 (사용료 지원)
기술이전 및 연계	· 정부출연 연구기관, 대학, Geri 등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화 아이템 발굴	‘17년 하반기
기술커뮤니티 활동 지원	· 기업간, 기업-대학간 기술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보교류 지원	‘17년 하반기

다. 운영체제

- (1) (구미시)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책결정 및 사업총괄
- (2) (사무국) 운영 총괄 실무 *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정책연구센터
- (3) (분과위원회) 연구개발, 신규사업 발굴 및 기술교류 등

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(1) 국내 ICT의 생산거점이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 위기감 고조
- (2) 대기업 중심의 직렬적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, 지역 중소기업의 노력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급증

※ 기업연구소 ('08)179개 → ('16)400개, 전담부서 ('08)47개 → ('16)195개

- (3)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(창립 '16.7.21)를 중심으로, 중소기업의 수직적·수평적 경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괄지원체계 구축과 사전 R&D 과제기획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선제적인 대응 필요
- (4) 지역의 산학관연 주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 기능과 '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'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재정 지원) 제1항, 제4조 제1항
- (3)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4조(책무) 제1항, 제3항

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제1항

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제1항, 제2항, 제4조 (사업)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

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

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

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
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※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

- 제4조(책무)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진흥시책 및 그 인력·인재 육성, 정보네트워크 구축,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동시에 독창적 및 공동 연구개발, 신기술의 보급·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
- 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

적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과학기술 진흥사업 등)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, 정부출연기관, 공공기관, 학계, 연구기관, 산업체, 과학기술인 단체 등(이하 “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(이하 “진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

2.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

가. 첨단·지식기반·뷰티·탄소 및 물산업

나. 부품·소재산업

다. 신성장동력산업

3. 중소기업 신기술·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(이하 “관련사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력 육성사업

2. 문화 확산사업 3. 혁신역량 등 강화·활성화사업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교육훈련사업
3. 인력양성사업
4.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
5. 정보교류사업
6. 기술혁신지원사업
7. 시험생산사업
8. 시설·장비 운용사업
9. 전자·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소관 실 · 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유 익 수
	담 당	조 영 열
	담 당 자	강 욱 현 (480-6103)